

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춘남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-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·평가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사업 등(안 제5조)
-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시설의 위탁(안 제6조~제7조)
- 위원회 운영 관련(안 제8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, 제10조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5조의2
-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활력을 부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신중년 세대의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,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, 문화·여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은퇴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참여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행 전 관내 신중년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사업을 추진중인 타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.